

TaxFlash

February 2026 / No. 04



Page 1

Updated rules on the use of book value for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of assets in the context of merger, consolidation, spin-off, or acquisition

Page 3

Implementing rules of the tax collection process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와 관련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장부가액 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

국영기업(SOEs)의 구조조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부(MoF)는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와 관련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 장부가액 사용과 관련된 세제 정책을 조정하는 내용의 재무부 규정 제 PMK-1호를 제정·발표하였습니다.

PMK-1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영기업(SOE)의 정의 확대

PMK-1은 국영기업(SOE)의 정의를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조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a.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 출자를 통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자본을 보유한 조직; 또는
- b.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수한 권리를 보유한 조직 — **신규 규정**

2. 사업 지속 요건

사업 목적 테스트 요건의 일환으로, 합병, 통합, 분할(자산을 취득하는 법인만 해당)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납세자의 사업 활동은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 유효일로부터 최소 4년간(기존 5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장부가액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예: 사업 목적 테스트 불충족, 자산 이전 신청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에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자산의 이전 가액은 시장가액을 사용하여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PMK-1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시장가액을 적용하여 재산정을 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재무부 규정(*Peraturan Menteri Keuangan/PMK*)이 발효되기 이전에 장부가액 사용 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
- 사업 목적 테스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과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사업 활동이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의 유효일로부터 최소 4년간 지속된 경우
- 본 PMK 발효 이후에 다른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를 수행한 경우

3. 장부가액 사용에 관한 규정의 평가

재무부(MoF)는 본 재무부 규정(PMK)의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규정에 따른 장부가액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평가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또한, 해당 장부가액 규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권한은 국세청장(DGT) 및 경제·재정전략 총국장에게 위임됩니다.

경과 규정

본 재무부 규정(PMK)에 따른 경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22일 이전에 발급된 장부가액 사용 승인은 계속 유효합니다.
- 2026년 1월 22일 이전에 장부가액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동 일자 현재까지 국세청장(DGT)의 결정을 받지 아니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PMK-81², 최종적으로 PMK-54³으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금 징수 절차에 관한 시행 규정

2023년 6월 12일, 재무부(MoF)는 체납 세액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PMK-61⁴ 제정·발표하였습니다. PMK-61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사 [TaxFlash 제06/20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5년 12월 31일, 국세청(DGT)은 PMK-61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규정을 제정·발표하였습니다:

1. PER-26⁵은 체납 세액의 회수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 정지, 압류 및 매각 절차와 함께 고객자금계좌(*Rekening Dana Nasabah/RDM*)내 자금의 이전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PER-27⁶은 세금 징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련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27은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PER-24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각 국세청 규정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상장주식의 압류 및 매각 절차

PER-26은 사용되는 계좌의 유형, 증권 보관 계좌(서브계좌)에 보관된 주식 및 고객자금계좌(RDN)에 보유한 자산의 거래 정지,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 압류 및 매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DGT)은 압류 및 매각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증권계좌, 고객자금계좌(RDN) 및 임시보관계좌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정보에 대한 요청
2.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인도네시아 중앙증권예탁결제원(*Kustodian Sentral Efek Indonesia*), 또는 RDN 은행을 통한 거래 정지 요청
3. 세무집행관(*Jurusita Pajak*)에 의한 압류
4. 압류된 주식의 국세청 증권 하위계좌로의 이전
5. 인가된 중개인을 통한 매각
6. 매각 대금의 관리 및 국고 납부

납세자가 압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은 압류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납세자의 고객자금계좌(RDN)에 보관된 자금을 국세청의 RD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는 잔여 현금 또는 남은 주식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MoF Regulation No. 61 Year 2023 (PMK-61) dated and effective from 12 June 2023

5 DGT Regulation No. PER-26/PJ/2025 (PER-26) dated and effective from 31 December 2025

6 DGT Regulation No. PER-27/PJ/2025 (PER-27) dated and effective from 31 December 2025. PER-27 revokes

DGT Regulation No. PER-24/PJ/2017 (PER-24)

세금 징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차단 및 제한

PER-27은 종전의 PER-24에서 규정하였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관세 관련 접근 권한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PER-27에 따라 현재는 법인행정시스템 접근 권한(*Akses Sistem Administrasi Badan Hukum/AHU*), 관세 시스템, 그리고 정부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PER-27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차단 또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종결된 체납 세액이 최소 1억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100,000,000)에 달하는 경우. 다만, 토지 또는 건물의 압류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강제징수명령서(*Surat Paksa*)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PER-27은 차단 또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세액 및 징수 비용이 전액 납부된 경우
- 조세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 충분한 가액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 분할 납부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 징수 시효가 만료된 경우
- 징수 담당 공무원의 권고가 있는 경우
- 법무부에 대한 접근 차단 해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이행된 경우. 다만, 이는 법인행정시스템(AHU)에 한하여 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차단 또는 차단 해제 요청은 2026년 1월 31일까지 PER-27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ka Putra raka.putr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iyadi riyadi.riyadi-c@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man Santosa aman.santosa-c@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vo.putranto@pwc.com
Angga Wardhani angga.w.wardhani@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www.pwc.com/id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